

【 다이렉트늘안심입원비보험(II) 사업방법서 별지 】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 - 상해/상해보험
2. 보험종목의 명칭 : 다이렉트늘안심입원비보험(II)
3. 보험의 목적 :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신체
4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연령에 관한 사항

보험 기간	보험료 납입주기	담보	가입연령	
			최초계약	재가입 계약 ^{주1)}
3년	일시납, 36회납	상해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1일이상)	보험나이 1~60세	보험나이 4~77세
		일반상해골절진단(치아파절제외)		
		일반상해화상진단		
		일반상해5대골절진단		
		질병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		
		암직접치료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		
		뇌혈관질환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		
		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		
		암진단		
		레진/인레이/온레이 충전치료		
		크라운치료	보험나이 18~55세	보험나이 21~67세
		고정성가공의치/임플란트보철치료		

주1)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에 따라 이전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 가입된 계약
단,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
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
5. 의무부가특약에 관한 사항 : 아래 특별약관을 보통약관과 함께 의무 부가함
 - 질병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
 - 암직접치료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
 - 뇌혈관질환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
 -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
6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7.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: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
에 따라 적용함

8.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

(1) 대상 특별약관 : 전담보

(2) 보험기간 종료후 재가입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
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 (이하 재가입일 이라 합니다)에 재가입 되는 것으로 함

①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료납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것

② 재가입 직전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할 것

③ 재가입일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연령이 사업방법서에 정한 가입연령 이내일 것

(3) 보험료 납입방법: 최초계약과 동일

9.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0.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: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'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에금이율 + 1%' 적용

11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2.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3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4.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5. 공시이율에 관한사항 : 해당없음

16. 기타

(1) 담보별 가입제한 사항

보통약관, 질병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, 암직접치료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, 뇌혈관질환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,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(입원일수 차등지급, 4일이상)의 보험가입금액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
(2) 입원일당관련 담보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함

① 입원일당 차등지급에 관한 사항을 판매표준스크립트 내에 중요사항으로 안내할 것

- ② 계약체결 후에 발송하는 LMS(Long Message Service)에 입원일당 차등 지급 내용을 포함할 것
- ③ 보험증권 및 상품설명서 내에 문자 및 도표 등으로 입원일당 차등지급을 기재할 것
- ④ 완전판매 모니터링 대상 항목에 입원일당 차등지급 내용을 포함할 것
- (3) 판매채널: 범용(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제외)
- (4) 아래의 특별약관들을 가입할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패키지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.

Package(1)	Package(2)
레진/인레이/온레이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	레진/인레이/온레이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, 고정성가공의치/임플란트보철치료

- (5) 회사는 암 입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,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함.